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544호

2019. 10. 1.(화)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299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 공 고

제2019-2578호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안 행정예고 8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299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록기관”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방법”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사무”를 “전자등록사무”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조례 제3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1.2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원리금 상환 절차) ① 공채의 원리금 상환은 상환일 도래 시 다음 각 호 중 공채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동의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공채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
 2. 매출대행기관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공채매입자의 계좌로 지급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채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채매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출대행기관에서 공채의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공채상환 안내 방법)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공채상환 안내는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안내할 수 있다.

1. 공채매입신청서에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등의 이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안내받을 자의 신원,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우편을 통한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

제21조 중 “등록발행”을 “전자등록발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8조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리금의 상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채 매입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채상환 안내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환일이 도래하는 공채 상환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채 상환일 이전 개별 상환 안내를 의무화하고, 공채 신고시장가격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철도공채 이자의 이율을 인하하여 신고시장가격 안정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행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의 이자의 이율을 연 1.25퍼센트에서 연 1.0퍼센트로 인하함(제15조제2항)
- 나. 증권 및 은행 계좌를 통한 원리금 상환 절차 규정 신설(제16조)
- 다. 상환 개시일 10일 전 공고 규정을 삭제하고 우편발송을 하되 상환 안내 어려울 시 市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조항 신설(제18조)
- 라. 매입신청서, 매입증서 양식 수정(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신청서

(앞면)

(입금표 지점보관용)

공채 매입금액	금	원정 (₩)			
성명(업체명)		주민(사업자)등록 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징 구 기 관		매 입 용 도			
공채보유여부 (해당란에 ○표)	1. 즉시매도() 증권시장가격으로 대표증권사에 매도		2. 공채 개인보유(지급방법 선택 가능) 가.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공채매입자의 증권계좌로 납입() 나. 매출대행기관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공채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납입() (계좌번호 :)		
1. 위와 같이 「도시철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공채를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공채 만기상환 원리금 청구의 편의를 위해 매출대행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의 예탁계좌 또는 매출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신청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4. 위의 공채를 즉시 매도하는 경우 매출대행기관을 통하여 대표증권사에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며 공채 매도대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본 지 점	수 수 료	매도가격	결 재
입 금	수입제세	선급이자	
본입보유여부	공제합계		실명확인
매입금액	용도기관	지 급 액	

180mm×112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공지사항

1. 공채 관련사항

- 1) 발행근거 : 「도시철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에 의거 발행
- 2) 발행방법 :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하여 발행
- 3) 상환조건 :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원리금 상환일에 일시상환
- 4) 이 율 : 연 1.0퍼센트(최초 5년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간은 단리)
- 5) 소멸시효 : 원리금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 및 이자 각각 5년**
- 6) 원리금 상환일 이후의 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2. 공채 매입용도

- 1) 자동차등록
-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 3)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
- 4) 건설기계등록
- 5) 식품영업 허가
- 6) 관광숙박업 등록
- 7)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유원시설업의 허가**
- 8) 사행행위영업 허가
- 9) 체육시설업 등록
- 10) 업종 소지 허가
- 11) 수렵면허
- 12) 주류판매업 면허
- 13) 주류제조업 면허
- 14)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 15) 토지형질 변경허가
- 16) 카지노업 허가

3. 즉시매도 시 처리절차

매입신청서 작성 · 제출(즉시매도선택) → 공채 매입금액과 공채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매입확인증교부 → 매입확인증 징구기관에 제출

4. 공채 개인보유 시 처리절차

매입신청서 작성 · 제출(공채보유선택) → 공채 매입금액을 납부 →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교부 → 매입증서 보유, 매입확인증 징구기관에 제출

보유도중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 당월 및 전월 발행분에 한하여 매출대행기관에서도 매도 가능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계좌납입 미선택 시 원리금 상환일 이후 매출 대행기관에서 상환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No. 가 0,000,00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증서

발 행 번 호 :

성명(업체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매 입 금 액 :

매 출 일 :

발 행 일 :

원리금상환일 :

입고증권회사 :

계 좌 번 호 :

소멸시효 완성일 :

위와 같이 「도시철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였음을 확인함.

매출대행기관 : ○○은행 ○○지점장 (인)

(문 의 처 : ☎)

서 울 특 별 시 장

190mm×130mm[보존용지(1종)70g/㎡]

〈뒷 면〉

1. 이 증서는 「도시철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한 자에게 교부한다.

〈공채 발행조건〉

- 공채의 발행일 : 매월말일
(실제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 선급함)
- 공채의 상환 :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원리금 일시상환
 - 이율 : 연1.0퍼센트, 최초 5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은 단리
- 공채의 원리금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공채의 원리금은 원리금 상환일 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공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2. 이 증서는 권리증서가 아니므로 타인에 양도 시에는 그 효력이 없으며, 입고증권회사가 공채매입자의 실명확인 시 참고자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3. 위 공채를 중도매도 또는 질권 등을 설정하거나 만기시 원리금을 상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도장(또는 서명)과 주민등록증(가족의 경우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앞면의 증권회사에 개별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 중도매도 없이 만기까지 보유한 공채에 대하여는 공채매입자가 앞면의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신청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만기 상환 전 신청계좌를 중도 해지한 경우 포함)에는 공채매출은행에 만기 상환 원리금 지급을 청구한다.

4. 위 공채는 매도주문 대행계약과 증권거래소의 제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해서 중도 매도할 수 있다.

5. 증권계좌나 은행계좌 납입을 통해 이미 원리금 상환을 받은 고객은 공채매출은행에 원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주)

- 1) 표면의 기재사항에 정정이 있는 것은 무효임
- 2) 이 증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 3) 매출점 책임자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 4) 중도 매도시 당월 및 전월 발행분에 한하여 매출대행기관에서도 매도 가능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578호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안 행정예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1. 시행이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의 교통량을 감축하고 대기질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녹색교통지역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 진입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른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 예외
- 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구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다. 운행제한 기간 : 상시 06시부터 21시까지
- 라. 우회도로 및 대체교통수단 등 대책 안내
- 마.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시행 및 과태료 부과 등
 -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
 - 과태료 : 1일 25만원(「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장이 과태료 금액 50만원의 1/2 감액)

3.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25, 2233, 2236, 팩스: 02-2133-1048, E-mail: aimit@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공고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안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 교통기획관 임동국 ○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상신, 담당 노리라							
4. 근거법령명등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 ○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 ○ 서울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 (국토부 고시 제2017-144호)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국토부 고시 제2018-483호)				관 련 규제수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전국)							
6. 규제존속기한	○ 기한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구역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기간 및 시행일자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지난 '17.3월에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함
* 서울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국토부 고시 제2017-144호)
-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목표로 승용차 통행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3개 부문, 9개 분야의 녹색교통지역의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국토부 고시 제2018-483호)
-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기 앞서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화문광장 대토론회('17.5월)에서 82%의 시민이 찬성하였으며, 친환경등급제 관련 설문조사('18.6월)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에 따른 운행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7%로 조사되었음
- 또한,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18.4.25)하여 자동차 연식, 유종,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였으며, '19.2.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최하위등급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과 동일하지만, 상시적으로 운행제한이 시행되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차량 5등급 차량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 이러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 민원현황을 분석하여 주로 나오는 민원대상에 대해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하는 내용을 공고(안)에 반영하였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녹색교통지역의 모든 진입도로(45개 지점)에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대해 자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시범운영 기간 중에 단속대상에 대해 운행제한 안내 문자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음
- 또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기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지역에서 '녹색교통지역'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대체할 규제가 없으며,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19.7.18)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19.7.18)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이 단속될 경우,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게 됨

나. 규제의 편익분석

- 녹색교통지역 내에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서울시민의 건강, 대기질 개선 등의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15.6% 감소, 서울시 전체 3.7% 감소 추정
(출처 : 지자체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방안-서울시 친환경등급제를 중심으로('18.9월))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경우에는 과태료 25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10만명 이상의 녹색교통지역 거주민, 26만명 이상의 상주인구, 일평균 76만대 이상의 통행차량 운전자의 직접적인 건강 보호와 더불어 서울시 전역의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하여 천만명 이상의 서울시민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이 녹색교통지역의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녹색교통지역에 대해 공고를 통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음
-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서울시 고시·공고·훈령·예규에 대한 행정예고·규제심사·법제심사 매뉴얼」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시장이 녹색교통지역의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녹색교통지역 내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사항임
-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녹색교통지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특별종합대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등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시 직접 운영 및 대행업무 등의 장·단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민원을 처리할 예정임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